건설교통부

보도자료

• 수도권정책팀 팀 장 김경욱
사무관 이필환
• ☎ 02-2110-8145~6
• moctlph@moct.go.kr

• 12월1일 배포(총 16매)

• **12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최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등 -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2020년까지의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월 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공간배치와 광역기반시설 건설방향, 수도권 규제 운영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제2차 계획('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따르면,

- 전국인구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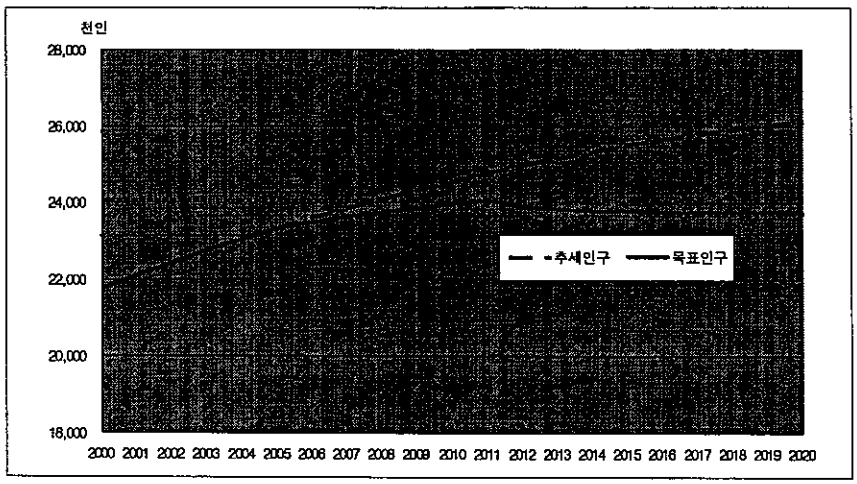

· 인구안정화 시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시·도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연계하되,

공공시설 공급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15% 수준의 완충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 서울 980만, 인천 310만, 경기 1,450만)

-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서울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 도시권이 상호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 택지의 공급도 기존 도시권내의 택지공급과 더불어 고속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권역제도는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체계를 유지하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현행 권역체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권역을 조정하거나 권역을 세분하고,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현행 권역제를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당분간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의 규제방식을 현행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서 개별입지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년제 간호전문대의 4년제 승격을 허용하고,

·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규제를 정비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업 공장 입지규제도 계속 시행하되, 국민경제상 시급한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계획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공청회 개최와 아울러,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요청하였다(12월 2일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은 지난 6.27 확정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①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이전한 지역, ②접경지역 등 低발전되거나 낙후된 지역, ③기존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시·군내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규제방식을 기존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로 전환한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중

· 도시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규모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허용(다만,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시업지를 더 이상 확보가 곤란한 짜투리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0만㎡미만 허용)

·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허용

※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은 개발총량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대규모 개발이 오염관리와 기반시설 확보에 유리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법 12.2~12.21, 시행령 12.2~12.12)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06년 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요
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주요내용
3.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주요내용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5.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연접개발 사례

【별첨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

○ 명칭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05.12.2(금) 14:00~17:00, 국토연 대회의실

○ 주관 : 국토연구원 (후원 : 건설교통부)

□ 행사진행(안)

○ 14:00 ~ 14: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14:05 ~ 14:10 개회식(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14:10 ~ 14:40 계획안 발표(이동우 국토연 연구위원)

○ 14:40 ~ 16:00 지명토론(사회 : 이정식 안양대 교수)

※ 토론자 (8명)

- 김경욱(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
- 김제국(경기개발연구원)
- 오성규(환경정의)
-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 허재완(중앙대 교수)
- 황희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16:00 ~ 17:00 일반토론

○ 17:00 폐 회

【별첨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주요 내용

1. 계획의 개요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공간배치와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계획기간 2006~2020)

- 공간구조 개편, 광역시설 정비 및 확충, 권역 정비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공업지역 정비 및 시도별 발전방향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수도권의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질적 발전을 추구

나. 수도권 인구지표 관리

○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 목표

(단위 : 천명)

구 분		2004	2011	2020
전국인구		48,082(100.0)	49,375(100.0)	49,956(100.0)
수도권 인구	추세인구	23,054(47.9)	24,789(50.2)	26,133(52.3)
	목표인구	23,054(47.9)	24,063(48.8)	23,752(47.5)

○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정비계획의 인구지표와 연동하여 관리

- 계획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의 ±15% 수준으로 관리

※ 서울특별시 980만인, 인천광역시 310만인, 경기도 1,450만인

다. 공간구조 개편

○ 서울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다핵 연계형」공간구조로 전환

-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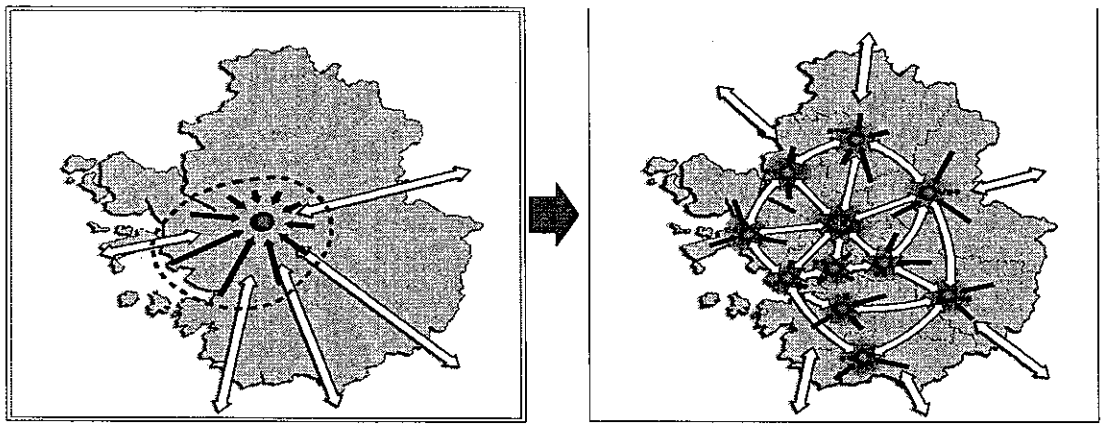

라. 권역제도 운영방안

○ 단기 : 현행과 같은 권역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 완화

-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중기 : 권역의 조정 또는 세분화방안 검토

○ 장기 : 현재의 권역제도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마. 인구집중 유발시설, 개발사업의 관리

○ **주택 및 택지** : 2020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15%

- 소규모·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개선한 광역개발 방안을 강구

※ 광역개발을 통해 공원·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

- 서울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수도권 외곽에 자족성이 높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

○ **공업용지 공급**

- 수도권과 지방의 공업지역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단지를 공급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 이내로 관리('04년말 18.4%) -- 년 2.0㎢씩 3년간 총 6.0㎢를 공급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도심지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 정책을 추진

○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계속 억제하되, 국민경제에서 첨단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허용을 검토

-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계속 금지하되,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을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이전대상기관 기관의 청사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

-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권역세분화와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자연보전권역에서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대형건축물을 설치 금지대상에 제외하는 방안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택지개발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적 개발을 유도

- 자연보전권역

  ·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허용규모 확대 검토

· 대규모 관광지 조성규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선별 허용

바. 광역시설의 정비

○ 전철 수송부담율을 '02년 23.6%에서 2020년 40%로 제고

○ 남북 7축, 동서 4축, 4개 순환망(7×4, 3R)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 환경보전과 관리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미세먼지 : 69㎍/㎥(2003년) → 40㎍/㎥(2014년)
- 이산화질소 : 38ppb(2003년) → 22ppb(2014년)

○ 2007년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

-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오염총량제 시행

○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녹지축 형성을 추진

3. 계획의 집행과 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년주기로 평가 보완

【별첨3】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계획의 실행력 제고

□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는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추진계획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식적 운용

□ 개선방안

○ 수도권정비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도별 정비발전계획」** 수립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건교부장관 승인으로 확정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지정대상

① 행정·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 및 인근지역 또는 당해 시설이 이전할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수도권내 低發展되거나 落後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 기존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정절차

○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 지정효과 및 시행상 특례부여

○ 권역별 행위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공업입지 규제**

○ **지방세법상의 조세 중과**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규제완화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기본적인 틀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방침

3.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개선

□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로만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6인)

□ 개선방안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5인까지 지정토록 규정

4. 과밀부담금 추징근거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감면 이후 주차장 등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수 근거가 없어 탈법조장 등 부작용 초래

⇒ 용도 변경시 감면한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가능토록 규정

【별첨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경위

○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등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여(1차 : 9.29, 2차 : 10.21) **환경부 등과 합의** 도출

- 합의내용 반영에 따라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필요**

□ **재입법예고 내용** : 오염총량제 시행+지구단위계획 수립전제

○ **도시지역**(녹지제외) : 연접규제 미적용

- 10만㎡이상은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 10만㎡미만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非도시지역** : 연접합산 기준으로 10만㎡~50만㎡ 개발허용

○ **도시+非도시지역 중첩지역**

- 도시·비도시 합산면적 기준으로 50만㎡까지 개발허용

○ 도시개발사업중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과 동일 성격이므로 상기 허용 기준을 준용

※ 재입법예고 근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 입법예고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입법예고 이행

【별첨5】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연접개발 사례**

A 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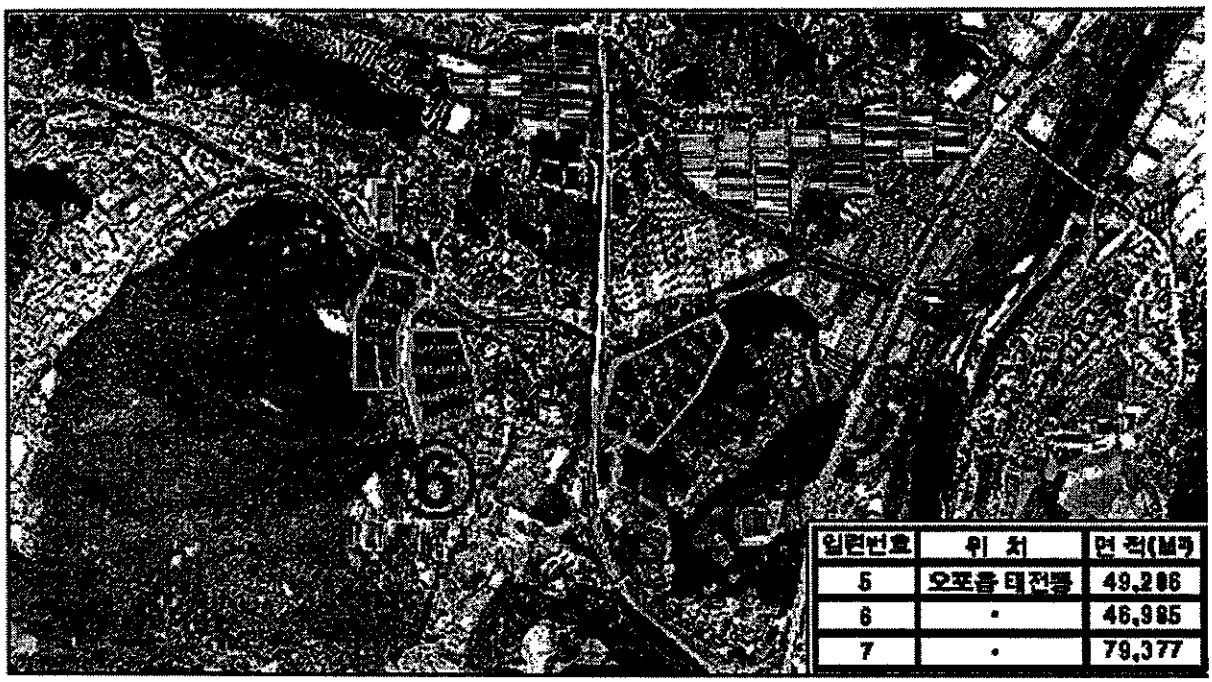

일련번호	위 치	면 적(㎡)
5	오포읍 대전동	49,286
6	"	46,985
7	"	79,377

B 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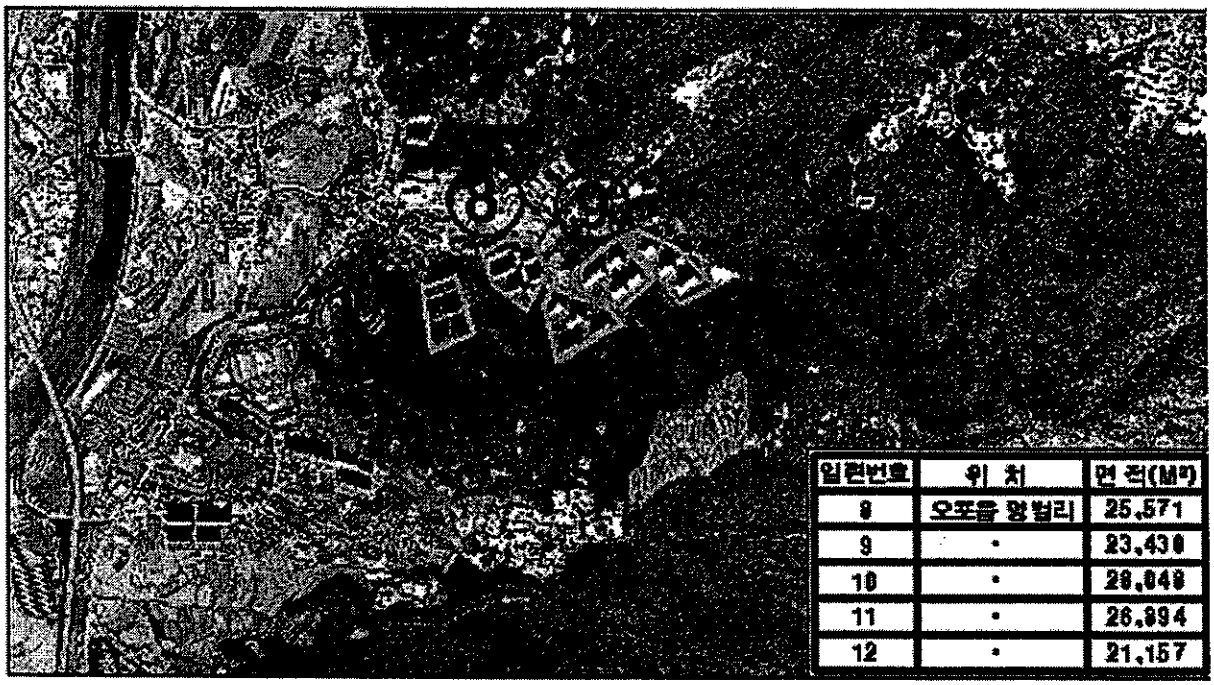

일련번호	위 치	면 적(㎡)
8	오포읍 양벌리	25,571
9	"	23,430
10	"	28,048
11	"	26,894
12	"	21,157